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1-27

제출년월일 : 2011.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가. 7월 준공예정인 염리 생활체육관 등 구립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사용료 징수 등의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폐지조례에 의해 관리하던 체육시설(망원동 테니스장,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체육관의 사용시간 구분 (안 제6조)
- 주간 06시~18시, 야간 18시~22시이며, 체육시설에 따라 조정
-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종료 시에는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사용료 징수 (안 제8조)
- 이용자별 사용료의 범위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 음향장비 및 냉난방 사용료

다. 사용료의 감면, 할증 (안 제11조)
- 경로우대자,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등 50% 할인
- 마포구체육회, 생활체육회 주관의 공식행사 등은 전액면제
- 토·일·공휴일은 30% 할증
- 마포구와 협약이 있는 경우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

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 (안 제15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함

마.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16, 17조)

-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 이내로 구성, 심사가 끝나면 해산
-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는 심사 생략 가능

3. 제정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1. 4. 7 ~ 2011. 4. 27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공원녹지과와 협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폐지)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1. 5. 3)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개인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 관리·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시설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 경기 또는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하며, 이 경우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서울특별시, 구 및 각급 학교의 경기대회, 행사, 학예활동 등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마포구 체육회 또는 마포구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8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제10조(전용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전용사용 신청자는 사용료의 추산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가 취소 또는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 개시일 3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8

나. 사용 개시일 2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7

다. 사용 개시일 1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6

라. 사용 개시일 3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이 경우 감액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2. 사용료 전액 면제

가.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마포구 체육회, 마포구 생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프로그램의 계절별, 시간대별 특징 또는 이용자의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③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2.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이용자 책임)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하거나 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상복구 등을 위한 이용자 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설비 등) 이용자가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공신력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국장
2.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마포구 체육회 이사 1~2명
4. 체육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1~3명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제3조 관련)

시설 명칭	시설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74-3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망원동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62-8 일대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3-243 일대
망원동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60-5 일대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시설 명칭	대상	사용료	연령구분	비고
염리 생활체육관	성 인	30,000원 ~ 90,000원	만 19세 이상	※ 사용료 기준 : 1시간, 주1~5회, 1개월
	청소년	30,000원 ~ 60,000원	만 13세~만 18세	
	어린이	20,000원 ~ 50,000원	만 12세 이하	
망원동 테니스장		2,000원	- -	※ 사용료 기준 : 1시간, 면당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원	- -	
망원동 배드민턴장		2,000원	- -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 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면제

【별표 3】

전용사용료 (제8조 관련)

시설 명칭	시설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55,000원	80,000원	※ 사용료 기준 : 2시간, 부가가치세 별도
	다목적 체육실	15,000원	30,000원	
망원동 테니스장		10,000원	- -	※ 사용료 기준 : 1일, 면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의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 명칭	시설 구분	시설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15,000원	30,000원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 체육실	10,000원	10,000원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